

## 상고이유서

사 건 2017다23233 기타(금전)

[담당재판부 : 민사 1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위 당사자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8장. 첨부 6장. 총14페이지.

## 1. 있었던 일

1. 2001년 6월15일 업무 중 교통사고로 목 뼈 골절 및 안면 타박상으로 최종은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치료 받았습니다. 2002년 11월 4일 제 의사와는 다르게 강제로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회사에 복귀를 하여, 처음에 담당과장님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하면 좋습니다. 또, 통증이 심할 때는 좀 누워있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고 사정 예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죽변분기국사가 다른 곳 보다 일이 적다고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죽변분기국사는 제가 근무해보았던 곳인데 실내지만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일 하는 곳이라 불편하다고 예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몸속에서 통증이 있는데(머리 목 어깨부분) 보기에겐 멀쩡해 보이고, 최종 “의사 장애진단서(갑 제11-1호증)”에는 머리 아프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 아프다고 하면 피병이라고 했고, 머리 부분이라 중요하게 생각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심사결정서)(갑 제8-1호증)” “재심사결정서(갑 제8-2호증)” 를 했습니다.

죽변 분기국사에 몸이 불편한 상태로 일 할 수 없어 처음에는 병가 및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이용하고 과장님께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진행중이라고 상담하니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노동조합의 단체협약(갑 제9호증. 제25조(휴직참고))” 휴직하려고 했으나 다른 분에게 연락도해보고 하시더니, 갑자기 휴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휴직사규를 보여주지 않았고, 회사사규를 치워버렸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병이라고 하시어 “그 당시 치료받았던 병원 의사진단서(갑 제11-2호증)”도 제출 했습니다. 그래도 피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 출근해야 하므로 시설운영과로 출근했습니다. 시설운영과는 사무실인데 제 책상도 없고 해서 케이블운영실은 현장에서 전주를 오르내리며 일하는 직원들이 출근 퇴근 때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으로

목 안대를 하거나 소파에 누워있으면 과장님이 꾀병이라고 했고 병원 치료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를 요구해 사유서도 여러 번 적었습니다.

☞. “징계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 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일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사유대로 휴직을 활용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2. “징계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2010나173583때 다시 제출한 것” 4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게시 글을 통하여 회사와 간부 및 직원들을 비방했고 ~ ”

“ ~ “폭로(‘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과 같은데 처음2002년4월에 낸 책)책을 출간한 것은 다분히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인정된다.“

☞. 징계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에 없는 내용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징계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에 포함됐습니다. 징계사유통보서에 있다 고해도 저에게만 이치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건 부당합니다.

(‘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갑 제14호증’ 다른 분들의(인터넷 게시내용) 보시면 일 수 있습니다.)

3. 2009가합9702때 피고는 2010. 1.2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무런 계산근거도 없이 막연히 이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청구취지 금액의 명확한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대충 짐작해서 청구하려고 해도 소송인지비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2. 법원에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때 변론에서 판사님이 징계사유에 대해 얘기 했습니다. 징계사유에 기록된 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왜 이송신청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송신청 철회를 원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동조합은 믿지 못합니다.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원 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행정법원에서 성남 민사법원으로 이송 될 때 민사법원에서 도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조회 신청해 노동조합에서 거절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각하 판결 받아 이해 안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 진실을 밝히려면 행정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이송신청 하여 기각 당했으나 판결로서 이송해 달라 고 주장 했습니다.

### ◎. 2016재나35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8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1다17434때 주장한 내용. 아래처럼 주장했습니다.

☞. 그동안 여러 번의 재판에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묵살하여 판결했습니다. 높은 양심과 도덕심으로 이것을 인정하여 스스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갑 제10호증)을 보면, 저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처럼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민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천만원 지급 판결 받아 위의 주장처럼 감사한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2016재나905때에는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8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아래처럼 재심청구원인 변경을 했고, 법을 개정 혹은 정비해 달라고 민원을 하니 법원행정처 답변은 계속적으로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와 판사님 권한으로 대법원장님께 권의를 하셔서 민사소송법을 개정 혹은 정비해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 6번째 민원답변 1장 첨부)

1.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3 .소송 진행 중 협박당한 내용

○.이사건 2013재나20007 9월4일 변론 때 큰 체격의 노조간부님이 오셨습니다.

변론 마치고 법정을 나온 후 (가까이 다가와서)

“왜 자꾸 소송합니까?”

“조합활동 피해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인정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등의 폭언을 하여 억압당했습니다.

○.(위원장내용증명1장 첨부)

☞.뒷면 첨부내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4. 진행했던 내용

○.처음에는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조회신청서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2007가합3175)으로 이송했습니다.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중단,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대법원 2011다1743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498기각, 대법원 2012다1543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495기각, 대법원 2012다10835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20007각하, 대법원 2013다8092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30기각, 대법원 2014다67478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072각하, 대법원 2015다68584 상고이유서불제출기각. 서울고등법원2016재나35각하. 대법원 2016다4127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2016재나905기각. 불복하여 현재 이 사건입니다.

○.고등법원 2010나73583 때에는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 5. 맺 음

갑 17호증은 1995년 5대때 불법파업 집회 한 노조간부님들 명단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95년 5대 때만). 6대 노동조합에서도 불법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님들이 대령 해고됐고, 7대 노

동조합에서도 불법 파업집회로 노조간부님들이 대량 해고됐습니다. (5,6대는 불법 집회로. 7대는 명동성당 불법 파업집회로.) 어떤 분들은 해고됐다가 복직되고도 또 불법 파업집회로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은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을 근거로 소송비용 및 복직 될 때까지 근무자와 동일한 월급에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10년 넘게 혜택보고 복직한 분들도 여러 명 됩니다.

제가 8대 노동조합이 생긴 2003년에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사건으로 부당해고 되어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기금에 대하여 문의하니 노조간부님들은 파업집회하다 피해당한 것만 조합 활동 피해자로 인정되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노조계시판에도 항의했는데 답변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노동조합계시판 4장 첨부)

신분보장제도의 실지는 노조간부들의 불법파업집회를 하기위한 위한 제도였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있을 수 있다면 조합원 개개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즉 조합원전체의 신분보장 및 권리보호 하는데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법률로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 ※.참고

정부 6번째 민원(1BA-1703-129190) 하여 답변 받았으나 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판사님에게 해달라고 주장 하기 때문입니다.

#### 첨부

- 1.(법원행정처 6번째 민원답변 1장)
- 2.(위원장내용증명1장)
- 3.(노동조합계시판 4장)

#### 참고 : 제출된 증거

- 1심 때(성남지원 2009가합9702) 제출  
○.갑 제1호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 .갑 제2호증 규약
- .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
- .갑 제4호증 신분보장기금청구서 반려
- .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 .갑 제6호증 1997. 9.노보 아침을 여는 소리
- .갑 제7호증 확인서

2심 때(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제출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 .휴직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7장
-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 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 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 .징계사유통보서 없는 해고이유(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10장
-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52장
-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 .협박확인서 : 갑 제16호증
-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1장

2017. 8. .  
재심원고 임 그 루  
대법원 귀중